

제323회 임시회

2013. 9. 4(수)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8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8월 28일

3. 제안이유

신성장 동력사업인 뷰티산업을 충청북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나. 뷰티산업의 진흥사업(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제20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뷰티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전문인력 양성, 뷰티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등을 지원하고 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등을 통해 충청북도의 뷰티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서 뷰티산업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해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다만,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